

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8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규제개혁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 정비계획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지도·점검 및 개선명령과 과태료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남은 기타 조항이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※ 행정규제개혁 지침에 의거 폐지되는 조항

1. 제3조(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책무규정)
2. 제5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
3. 제10조(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)
4. 제13조(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)
5. 제14조(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 개선명령)
6. 제16조(유료화장실 승인)
7. 제18조(과태료 부과징수 등)

※ 위 조항을 폐지하고 남은 조항만으로는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자체를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기타 :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사본 - 별첨

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

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발췌서

□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제16조(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97.3.7>

□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

제35조(공중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, 대변기 11개(남자용 3개, 여자용 8개)이상, 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. 다만,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2.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, 긴 변이 115센티미터이상(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)일 것.
3.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. 다만, 상·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,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
5.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
6.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설비를 할 것

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
2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
3. 악취의 발생과 쥐 및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